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97
----------	-------

발의연월일 : 2026. 5. 8.

발 의 자 : 강민국 · 서명옥 · 이인선  
박덕흠 · 정동만 · 김태호  
김상훈 · 최은석 · 강명구  
박형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유통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 이내”를 “40일 이내(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중 “40일 이내”는 “50일 이내”로, “20일 이내”는 “30일 이내”로 본다.

제3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p> <p>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p> <p>① ----- ----- ----- -----<u>30일</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u>40일</u> 이내(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